

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3년 1월 4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1월 5일

3. 제안이유

비농업인의 농업활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농촌지역에 사회·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, 도시와 농촌의 상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‘충북형 도시농부’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가. 충북형 도시농부 등 용어의 정의 (안 제2조)

나.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(안 제3조)

다. 충북형 도시농부의 참여시간, 선정 및 교육 (안 제4조~제6조)

라. 충북형 도시농부 인력지원 대상 (안 제7조)

마. 지원사업 추진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(안 제8조)

바. 참여자 및 농업경영체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 (안 제9조)

사.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금 회수 등 (안 제10조)

아. 농업 관련 기관 등과의 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(안 제11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)

가. 제출배경

-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충북형 도시농부사업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목표로 그동안 외국인력에 의존했던 영농작업을 도시 유희인력에 연결함으로써 내국인 고용 창출 및 귀농·귀촌으로 유도 등 도농상생 사업으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
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과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나, 본격적인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됨

나. 조례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

- 이 조례안은 본칙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,
-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고 있고, 비농업인의 농업 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에 이바지함을 명시하였음
-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도록 하였음
- 안 제4조,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충북형 도시농부의 선정 및 교육 실시, 참여시간에 대해 규정하였는바 충북형 도시농부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,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인식개선 등 농업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

- 안 제7조,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참여자 및 인력지원 대상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본격적인 사업의 시행을 위해 세부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

다. 종합의견

- 이 조례는 비농업인의 농업 활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사회·경제적 활력을 증진 시키고, 도농 상생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 관련 법령에 위배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
- 현재 충청북도의 농어촌은 고령화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농촌인력 지원사업은 장기적으로 필요한바 ‘충북형 도시농부’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전문적인 농촌인력을 육성하여 귀농·귀촌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